

지배구조 헌장

2024. 04. 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ECO Hub

목 차

전 문.....	4
제 1 편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6
제 1 장 이사회 의 역할과 책임	6
제 1 조 (목표)	6
제 2 조 (책임)	6
제 3 조 (권한과 기능)	6
제 4 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7
제 5 조 (경영권 방어행위)	7
제 6 조 (리스크 관리)	7
제 7 조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7
제 8 조 (보수 정책)	8
제 9 조 (평가)	8
제 10 조 (멤버사와의 관계)	8
제 2 장 이사의 역할과 책임	8
제 11 조 (이사의 역할)	8
제 12 조 (이사의 의무와 책임)	9
제 3 장 이사회 의 구성	9
제 13 조 (적정 이사회 규모)	9
제 14 조 (적정 사외이사 수)	9
제 15 조 (이사회 전문성)	10
제 16 조 (이사회 다양성)	10
제 4 장 사외이사	10
제 17 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10
제 18 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공시)	10
제 19 조 (과도한 겸직 및 경업 금지)	10
제 20 조 (직무수행)	11
제 21 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11
제 22 조 (외부 전문가의 지원 제공)	11
제 23 조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11
제 24 조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소통)	12

제 5 장 이사회	12
제 25 조 (정기이사회)	12
제 26 조 (이사회 운영)	12
제 27 조 (이사회 의장의 역할)	12
제 28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13
제 6 장 이사회 내 위원회	13
제 29 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13
제 2 편 주주	13
제 1 장 주주의 권리	13
제 30 조 (주주의 권리)	13
제 31 조 (주주권 보호)	14
제 32 조 (주주의 책임 등)	14
제 2 장 주주총회	14
제 33 조 (주제 및 안건)	14
제 34 조 (일시·장소 등)	15
제 35 조 (이사 선임)	15
제 3 편 감사	15
제 1 장 내부감사	15
제 36 조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15
제 37 조 (감사의 직무수행)	15
제 38 조 (정보접근권 등)	16
제 2 장 외부감사	16
제 39 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16
제 40 조 (외부감사인인 주주총회 참석)	16
제 41 조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16
제 4 편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16
제 42 조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17
제 43 조 (정보공개)	17
제 44 조 (정보공개 접근성)	17
제 45 조 (공시책임자 지정 등)	17
부 칙	18

전 문

SK이터닉스(이하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SK에서 함께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SK를 선택한 사람들(이하 “구성원”)과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회사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키워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이루어진 회사의 전체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고,

사회에서 필요한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또한 회사는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회사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SK그룹(지분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경영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멤버사들로 구성) 멤버사들과 상호 공유·협력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호 공유·협력을 통해 회사를 포함한 SK그룹 전체의 생존과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영철학을 현실화함으로써 회사가 영구히 존속·발전하기 위해서,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회사는 이상과 같은 경영철학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담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SK이터닉스 지배구조헌장”을 선포한다.

2024년 4월 24일

SK이터닉스

제 1 편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제 1 장 이사의 역할과 책임

제 1 조 (목표)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궁극적인 경영 목적이 구성원과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존속·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의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회사의 사회적 가치 제공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신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조 (책임)

- ① 이사회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목표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다.
- ② 이사회는 경영자원 및 자본의 배분 등을 결정함에 있어 ESG 경영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회사의 목적 및 가치, 경영전략, 정책, 관행 등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 3 조 (권한과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 ②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
 - 2. 회계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3. 대표이사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4.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 검토
 5. ESG 정책 방향 설정
 6. 기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대외적 신뢰 관계와 관계되는 의사결정
- ③ 이사회는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 ① 이사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감독하여야 하며, 그 거래내역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 ② 합병 및 분할, 멤버사 간 자본거래 등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체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내부거래와 자기거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공정성의 판단 근거를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조 (경영권 방어행위)

이사회는 기업인수 시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주주 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리스크 관리)

- ①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ESG 리스크를 포함한 비재무적·재무적 리스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될 자를 발굴·육성하고,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사임, 기타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수 정책)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 정책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과 일치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 9 조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실시된 평가 결과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 10 조 (멤버사와의 관계)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목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멤버사들과 상호 공유·협력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가 SK그룹 멤버사들과 공유·협력할 것을 결정한 경우 회사는 SK그룹이 제공하는 인프라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이사회는 이와 동시에 회사를 포함한 SK그룹의 생존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사의 역할과 책임

제 11 조 (이사의 역할)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회사의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 구성

제 13 조 (적정 이사회 규모)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14 조 (적정 사외이사 수)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개인, 법인, 기관투자자 등 모든 주주를 포함하여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감독·견제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제 15 조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에 적합한 경험 및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16 조 (이사회 다양성)

- ①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식·경험·능력·성별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외이사

제 17 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 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그 스스로도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공시)

- ①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가 취임한 이후 제1항의 확인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외이사는 즉시 수정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과도한 겸직 및 경업 금지)

- ①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사외이사는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은 회사의 영위 사업과 연관된 경제적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에 속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직 등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직무수행)

-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 의사결정 사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장부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등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회사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고 회사 경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1 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 ①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외이사가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목표나 전략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의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외부 전문가의 지원 제공)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부담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3 조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 ① 회사는 이사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하고,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 24 조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소통)

회사는 사외이사와 경영진이 경영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운영

제 25 조 (정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연간 이사회 일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모든 이사에 대해 동등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일부 이사가 이사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원격통신수단(음성 또는 화상 및 음성)을 제공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보관한다.

제 27 조 (이사회 의장의 역할)

- ① 이사회 의장은 회사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적극적인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와 이사, 이사와 경영진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 이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회사에 제안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 29 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ESG 위원회 등)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법령과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둔다.
-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제 2 편 주주

제 1 장 주주의 권리

제 30 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②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주주는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의 정보제공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1 조 (주주권 보호)

- ①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2 조 (주주의 책임 등)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배주주가 회사 및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다른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회사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주총회

제 33 조 (주제 및 안건)

- 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ESG 경영 등 다양한 주제가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 결의 전에 주주에게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중복되거나 타당성 없는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4 조 (일시·장소 등)

- ① 회사는 주주가 의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회사는 이사 및 감사후보의 선정과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3 편 감사

제 1 장 내부감사

제 36 조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 ① 감사는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직위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이사, 집행이사 및 최대주주와 경제적, 신분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업무와 관련 된 법규, 재무제표 작성원칙, 감사인의 판단 등 감사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③ 감사의 보수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37 조 (감사의 직무수행)

- ①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와 이사회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정보접근권 등)

- ① 감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과는 별도로 감사는 경영진, 내부감사부서 직원, 외부감사인 등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의 협력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기타 외부전문가로부터 조력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 장 외부감사

제 39 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해당 회사 및 그 경영진, 지배주주, 연결모자회사 등으로부터 법적·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 조 (외부감사인의 주주총회 참석)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 제출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1 조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 ①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외부감사 활동 중에 외부감사인이 확인한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제 4 편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제 42 조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이사회와 경영진은 회사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또는 우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ESG 경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3 조 (정보공개)

- ① 회사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단, 기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4 조 (정보공개의 접근성)

- ① 회사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기업설명회 자료 등 정보공개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공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 45 조 (공시책임자 지정 등)

- ①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효과적인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회사는 공시책임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배구조 헌장

부 칙

2024년 4월 24일 제정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